

1. 개정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수립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가 20km로 제한되어 있어 필요시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0km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원거리 시설에 다수의 지구 사업비 투자로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안 제5조)

나.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전 검토 사항에 관계기관 협의 항목이 존재함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 청취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신속한 사업 이행을 도모 (안 제23조)

다.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전체 사업비 항목만 존재하고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이 부재하여 사업의 신속한 이행 및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투자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적 사업 이행 도모(안 제23조)

라.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 절차에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선대책 변경 절차 생략 항목 추가(안 제26조 및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가 포함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km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이 적절
한지의 여부

11. 영 제8조의3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제26조의 제목 “(개선대책 변경)”을 “(개선대책 변경 및 변경사항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미한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는”을 “경미한”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교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5. 개발사업 대상지 또는 인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7. 확정된 개선대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각 재원부담 주체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
8.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규모 등 변경 없이 사업비만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각 재원부담 주체 협의를 통하여 재원 부담률 및 부담 방안이 마련된 경우
9.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5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개선대책 수립 범위) ① (생략)</p> <p>②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km 이내)로 한다. <u><단서 신설></u></p> <p>③ (생략)</p> <p>제18조(개선대책 시행계획) ① (생략)</p> <p>제23조(개선대책 검토기준) 제22조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5조(개선대책 수립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u>. 다만,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가 포함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km까지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개선대책 시행계획)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23조(개선대책 검토기준) ----</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이 적절한지의 여부</u></p> <p>11. <u>영 제8조의3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연도</u></p>

제26조(개선대책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개발사업 대상지 또는 인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 수립권자

별 재원 투자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제26조(개선대책 변경 및 변경사항 통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와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5. 확정된 개선대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각 재원부담 주체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는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광역교통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경미한 -----

----- 다만, 광역교통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제27조(개선대책 절차 생략)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수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제27조(개선대책 절차 생략) ① -

있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5. 개발사업 대상지 또는 인접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7. 확정된 개선대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각 재원부담 주체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

8.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3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시설의 규모 등 변경 없이 사업비만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각 재원부담 주체 협의를 통하여 재원 분담률 및 분담 방안이 마련된 경우

9.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재검토 기한) -----

----- 2024년 7월 1일-----

-----.